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의견	5
1. 전부개정 취지 및 필요성	5
2. 법체계와 주요내용	9
IV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4
1. 총칙(제1장)	14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장)	25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제3장)	48
4.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제4장)	84
5. 보칙(제5장)	89
6. 벌칙(제6장)	97
7. 부칙	10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5. 4. 24.
3. 회 부 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왜곡·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장의 임기연장을 막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촉발됨.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 파견공무원 위주의 조직구성 등

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한 희생자·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민주발전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21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위원 2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1인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라.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안 제45조, 제46조, 제25조제9항).

마.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안 제47조 및 제59조).

바.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7조).

사.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조사개시·진실규명·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38조).

아. 파견공무원이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회 신설, 민간위원 중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함(안 제39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자.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위원회가 종전의 위

원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
칙 제8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전부개정 취지 및 필요성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이후 6개월 이내 종합보고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¹⁾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연혁 》

- 2020.12.10.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 접수 개시
- 2021.05.27. 제1차 조사개시
- 2021.12.07. 항일독립운동(이재실의 목포상업학교 학생운동,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첫 진실규명
- 2022.02.08. 2기 진실화해위원회 첫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건설호·풍성호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2022.05.24. 2기 진실화해위원회 첫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진실규명(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사건' 직권조사 결정
- 2023.02.11. 2기 진실화해위원회 첫 직권조사 사건(납북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24.08.06. '재일교포 복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진실규명
 - * 재일교포 복송 사건 정부 차원 첫 조사
- 2025.03.18.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권고사항(적대 및 군경 사건) 반영

1) 동법 시행령 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에 의거하여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 등을 위해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할 예정으로, 보고서 작성 시한인 11월 2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무처의 존속 시한은 2026년 2월 26일임.

- * 1949년 제네바협약, 2005년 유엔총회 채택 UN가이드라인 등
- 2025.04.15.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직권조사 완료
 - * 기독교(533명), 천주교(64명), 대종교(3명) 진실규명
- 2025.05.26.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만료
- 2025.11.26. 위원회 활동 종료(예정)
-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제2기 위원회의 처리대상 사건의 규모는 진실규명 신청 기간 (2020.12.10.~2022.12.9.) 동안 접수된 20,283건의 진실규명 신청사건과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하여 총 20,924건이고, 이중 종결사건은 18,808건 (진실규명결정 11,908건, 불능·각하·취하및이송 6,900건)으로 처리율은 89.9%이며, 조사중지 사건은 2,116건임.

《 제2기 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처리현황 》

(‘25. 5. 26. 기준, 단위: 건)

구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종결사건					조사 중지
			진실 규명	규명 ²⁾	불능	각하	취하 및 이송	
계	20,283	20,924 ³⁾	18,808					2,116
			11,908		6,900			
			10,852	1,056	679	4,113	2,108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29	131	25	-	14	63	12	17
적대세력 관련 사건	9,975	10,191	5,422	670	400	801	1,530	1,368
인권침해·조작의혹 확정 판결사건	3,898	4,096	2,816	381	119	332	361	87
역사적 중요사건	2,889	3,300	2,080	4	130	431	162	493
3·15의거 사건	208	219	43	1	14	9	3	149
기타	492	493	466	-	-	1	24	2
	2,692	2,494	-	-	2	2,476 ⁴⁾	16	0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제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6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내 배·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희생자·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 등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개별 사건도 있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동 전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및 배·보상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된 것으

2)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3)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4) 각하 처리된 기타 사건 2,476건 중 2,333건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신청 사건’임

로, 제3기 위원회를 2025년 12월 1일 출범하도록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보상의 근거 및 기준·범위 등을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 대상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정변경 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경우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 전체에 대해 주관적·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소 배치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에 대한 배·보상 대상, 근거, 방법 등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배·보상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도입도 필요하나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한 피해와 같이 재판상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법 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별도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2. 법체계와 주요 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6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 및 의견수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명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총 6장, 64개 조문으로 개편하여 구성하고 있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체계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u><신 설></u>	<u>제3조(피해자의 권리 등)</u>

현행	개정안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 및 직무배제 사유)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4조(사무처의 설치)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신 설>	제17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1조(진실규명 신청)
제20조(신청의 방식)	제22조(신청의 방식)
제21조(각하결정)	제23조(각하결정)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4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5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신 설>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24조(동행명령 등)	제27조(동행명령 등)
제24조2(청문회의 실시)	제28조(청문회의 실시)
제24조3(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현행	개정안
제24조4(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24조5(증인 등의 선서)	제31조(증인 등의 선서)
제24조6(증인 등의 보호)	제32조(증인 등의 보호)
제24조7(검증)	제33조(검증)
제25조(조사기간)	제34조(조사기간)
제26조(진실규명결정)	제35조(진실규명결정)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제36조(진실규명 미해결 결정)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7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신설>	제38조(결정의 공개)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제40조(위원 등의 보호)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3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제44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신설>	제45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신설>	제46조(고발 및 수사 의뢰)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제47조(국가의 의무)
제35조(불이익 금지)	제48조(불이익 금지)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49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제50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52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제53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제40조(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제54조(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55조(비밀준수 의무)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제56조(자격사칭 금지)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7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58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신 설>	제59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61조(벌칙)
<신 설>	제62조(양벌규정)
제46조(형의 감경 등)	제63조(형의 감경 등)
제47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
부 칙	부 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규정(권고사항 이행 관리 등)	•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적용례 규정(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특례 등) • 경과조치 규정(진실유명,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기록 승계 등)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1장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한 희생자·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민주발전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장은 위원회 위원의 수를 3인 늘려 이 중 2인을 국회의장이, 1인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제3장에서는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위원회 결정의 공개, 위원회의 압수·수색 및 고발·수사의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진실규명불능결정’을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4장에서는 명예회복에 더해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음.

제5장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장에서는 벌칙 관련 양벌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회 종료 이후 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하에서는 각 사안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제1장)

가. 목적(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u>폭력·학살·의문사·실종 등 인권침해사건</u> 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u>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u> 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이 법의 조사대상 사건을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학살·의문사·실종 등 인권침해사건”으로 하고,

현행법이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한 반면, 개정안은 목적을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진실규명이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 민주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이 법과 위원회의 명칭에 ‘화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2005년 법 제정 당시 제정이유에서도 그 목적을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 조문에서 ‘화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동 법률의 명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고, 위원회 명칭 역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점, 동 법률 제정이유에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법률 제정시부터 유지되어 온 ‘화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진실규명의 범위(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생략) 2. (생략)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u>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u> 4. 1945년 8월 15일부터 <u>권위주의 통치시까지</u> <u>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u> 인하여 발생한 <u>사망·상해·실종사건</u>,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u>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된 학살·살인·자의적 처형·자의적 구금·강제실종·외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u> 4. 1945년 8월 15일부터 <u>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u> <u>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u> 인하여 발생한 <u>살인·의문사·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u>,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u>사건</u>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해

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현행법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진실규명의 대상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학살·살인·자의적 처형·자의적 구금·강제실종·외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제4호에서 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의 기준시점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로 보던 것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로 확대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표현에서 ‘현저히’를 삭제하며, 사건의 종류에 의문사·고문·구금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거의 피해로부터 고통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의 진실규명 범위 규정이 입법 당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사건의 배경을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4호에서 ‘현저히’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경우 모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살인 등 행위가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에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확대의 필요성,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사범위, 조사활동의 제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제3호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이라는 배경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고려되어 오히려 조사범위를 축소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피해자 권리에 관한 규정(제3조)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피해자의 권리 등) ① 피해자와 유가족은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정부의 배상·보상계획 및 화해를 위한 조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위령사업 또는 추도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실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의 참여와 의견개진, 위령사업 등에의 참여 등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의 진실규명 과정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추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여러 국제규범

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바,⁵⁾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라. 위원회의 업무(제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u>진상규명 불능결정</u> <u><신 설></u>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u><신 설></u> <u><신 설></u>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의 설치 및 독립성)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u>진상규명 미해결 결정</u> 4. <u>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 해 발굴 및 추도사업</u> 5.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6. <u>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u>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업무

- 5)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는 국제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 (a) 평등하고 효과적인 정의에 대한 접근;
- (b) 고통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배상;
- (c) 위반 행위와 배상 장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24. 국가는 일반 대중에게, 특히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들에게 이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정한 권리들과 구제 수단,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권을 갖는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여타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들은 피해를 야기했던 원인들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과 관련된 원인 및 조건에 관한 정보를 찾고 획득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 행위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개정안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진상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변경하고,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원회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제3호의 용어 변경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현행법의 표현을 향후 재조사 등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미해결’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⁶⁾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불능결정 이후 재조사 추진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같은 용어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과 개정안 내에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법의 핵심적 방향을 나타내는 제1조(목적) 및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의 표현⁷⁾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진실규명’이라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2025년 3월 공개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내용 중 암매장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불능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해당 표현이 결과적으로 암매장이 없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미해결’, ‘미규명’ 등의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전남일보, “되레 5·18 왜곡 근거 우려 낳는 ‘4년 활동 결과물’”, 2025.3.25.

7)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학살·의문사·실종 등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이하생략)

《 현행법 및 개정안의 '진상규명' 용어 사용례 》

구분	조문
현행법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3. 진상규명 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개정안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미해결 결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등의 위원회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⑤ 사무처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장기미제사건의 진상규명 을 위한 별도의 조사 부서를 둔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③ 위원회 직원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협의회를 둔다.
	제5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3. 진상규명 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부칙 제8조(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 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제4호의 유해발굴 및 희생자 추도사업 추가 부분은 안 제26조가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는 후술하겠음.

제6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대법원 소관인 해당 업무를 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의 표현을 참고하여 이를 “제5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u>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u>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u>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u>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u>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예규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제3호의 경우 ‘진상규명불능결정’을 ‘진상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수정하려는 실익이 불분명하며,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 위원회 실무에 맞춰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6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은 대법원의 소관업무로서, 이를 위원회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장)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5조,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생략)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1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현행과 같음) (삭제) 3.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u>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⑤ (생략)	④ <u>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u>2년</u>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u>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6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u>3년</u>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u>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도록 하여 위원 2명을 추가하되, 11명 전체를 국회(국회의장 추천 2명,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8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 교섭단체 추천 2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위원회 구성 비교 》

구분		현행법	→	전부개정안
지명·선출권자		위원 수(상임위원 수)		위원 수(상임위원 수)
대통령 지명		1명(1명)		-
국회 선출	국회의장	-		2명(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명(1명)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8명(2명)
	그 외 교섭단체	4명(1명)		
	비교섭단체	-		1명(1명)
계		9명(3명)		11명(4명)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는 위원 수를 늘려 진실규명사건에 대응하고,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축소하는 한편, 비교섭단체 몫의 상임위원을 배정하여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두려는 취지로 보임.

먼저 위원 수 증가와 관련하여 2기 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사건 배정건수가 총 20,92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기 위원회의 11,175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할 때 위원 증원을 통한 진실규명

활성화 및 내실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1기·2기 위원회 조사배정 및 처리건수 현황 》

구 분	1기	2기
조사배정 및 처리건수	• 배정 11,175건 - (진실규명) 8,450건 - (규명불능·각하 등) 2,705건 - (조사중지) 20건	• 배정 20,924건 - (진실규명) 11,908건 - (규명불능·각하 등) 6,900건 - (조사중지) 2,116건

* 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재작성

다만, 1기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15인(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2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9인(상임위원 3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의 구성이 마련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⁹⁾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제37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국회가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1기 위원회 구성 방식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음.¹⁰⁾

9)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7건)

- *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등 47인)
- *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 *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4인)
- * [20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60인)
- * [20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등 11인)
- *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10) 대안반영폐기된 의안들은 상임위원 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윤재옥위원, 이채익위원 등이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8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이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추천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한 2019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2회의 안건조정위원회, 2회의 전체 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0년 5월에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진실규명 신청 건수의 증가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진실규명 신청 건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 외에 조사관 등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인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음으로,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통령 지명 몫을 없애 전체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의 추천 몫을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보다 다각적인 관점의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 위원회 조직의 경우 대통령의 위원 지명 몫을 없애거나 위원장 임명 방식을 위원회 의결로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상당 부분 제약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사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규정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생략) ② <u>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 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u>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 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6. (생략) ② <u>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u>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 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④ (생략) ⑤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음으로, 상임위원 수를 4명으로 늘려 신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¹¹⁾ 1기 위원회가 위원 15명 중 4명의 상임위원을, 2기 위원회가 위원 9명 중 3명의 상임위원을 각각 두었던 점을 고려할 때, 3기 위원회가 위원 11명 중 4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현재 위원회 내 2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소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각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선출한 8명의 위원 중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비교섭단체가 선출한 1명은 무조건 상임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여 선출된 위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도 위원 등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¹²⁾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조사기간이 수정될 경우 위원의 임기 또한 이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삼권분립의 원칙 및 의사·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나. 소위원회의 구성(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등의 위원회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소위원회의 업무를 진실규명 등 그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진실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위원회 내 두 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바,¹³⁾ 개정안은 위원 및 상임위원 수 증원과 연계하여 소위원회의 수를 늘려 명예회복과 유해발굴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 소위원회 담당 업무 》

구분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담당 조사분야	①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③ 1945.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① 1945. 8.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 경우, 인권침해 관련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

13) 현재 명예회복 관련 업무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발굴 등은 조사활동의 일환이나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음.

구분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④ 19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⑤ 그 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위 소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건

*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다만, 소위원회의 업무를 법률로써 한정하여 명시하는 경우 소위원회 활동의 유연성과 대응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률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유연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위원장의 직무(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 <u>예산회계법</u>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 <u>국가재정법</u> 」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신 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위원장의 예산 관련 업무 수행 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의 관계규정을 현행화(「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하는 한편,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65조¹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함.¹⁵⁾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별법률에서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14)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하생략)

15)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헌법 및 개별법 상의 탄핵소추 가능 대상 및 근거 》

구 분	대 상	근 거
헌 법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⑤법관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⑦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⑧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 직접적인 근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 간접적인 근거 (해임사유, 신분보장 조항)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제2호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정무직공무원(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처장을 지휘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가지는 등 위원회 및 그 산하조직의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책임이 크다고 하겠음.

《 「과거사기본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 업무 권한	근거규정
위원회 대표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업무를 통할	
대통령에 대한 의안제출 건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유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위원 면직 제청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회 회의 주재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사무처장 지휘	제14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장 임명 관한 제청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 임명 제청	
사무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	
자문기구 구성원 위촉권(위원회 의결 필요)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증인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검증실시통보서 발부(위원회 의결 필요)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4조의7(검증)
공무원 파견근무 요구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과태료 부과	제47조(과태료)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원장 및 위원회의 합헌·합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가슴기살군제피해구제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경우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되거나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소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탄핵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 규정 비교 》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위원회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5. (생략)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생략)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3. (생략)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6.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탄핵소추 규정 신설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다. 의사의 공개(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전체위원회마다 위원들에게 의사 공개 여부를 묻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고 내용은 공개하고, 심의·의결 내용은 비공개함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모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¹⁶⁾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의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비공개사유 등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 한겨레신문, “진실화해위 ‘서약서 동의 안 하면 감사 우선 대상’ 불이익 예고”, 2024.7.15.

다만, 회의록 공개 의무화에 따라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현재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의 장소, 일시, 출석위원 수, 안건명, 발언위원과 그 발언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 의무화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라. 사무처의 설치(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④ (생략) <u><신 설></u> ⑤ (생략)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사무처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u>장기미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조사 부서를 둔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은 사무처에 장기미제사건의 진상규명을 담당할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기미제사건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하여 재조사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사건들일 것이라는 점과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전담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의 실익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 사건 및 범위는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나,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 대부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십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사 부서에서 담당할 장기미제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후 그에 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14조제5항(개정안 제15조제6항)에서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장기미제사건 진상규명 담당 부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마.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7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u>

	<u>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u> <u>③ 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 절반씩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u> <u>④ 기타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고, 그 참여인원은 관련 피해자 단체와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안 제3조에서 명시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진실규명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피해자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를 법률로써 의무화하는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조사업무 수행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다는 의견도 있음을 심사 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¹⁷⁾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자·유족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이를 법정화 하는 경우 숙의공론화장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바. 직원의 신분보장(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② (생략)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 1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신 설></u>	<u>③ 위원회 직원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협의회를 둔다.</u>
--------------------	--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업무 관련 직원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위원회 내부에 직원협의회를 두게 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 진상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협의회는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이라는 제한된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가 동일한 직장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이 우선 적용되어 위원회 내 직장협의회 활동에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양자의 동일성 판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과거사정리법」의 직장협의회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등 양자의 성격 및 차이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징계위원회의 설치(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u><신설></u>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진실규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 중 구성 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 것임.

《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		과거사정리법 제19조 제2항
징계위원의 수	7인(민간위원 4인)		5명 이상 11명 이하(민간위원 1/2 이상)
자격요건	고등징계위원회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에 따른 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진실규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판사·검사 및 변호사, 기존의 관련분야 교수·부교수, 민간부분의 인사·감사 업무 담당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교수·부교수 및 민간의 인사·감사 담당자 등의 요건을 삭제하고 ‘진실규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력풀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교수 및 인사·감사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므로, 현행 규칙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이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조건으로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¹⁸⁾

18)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정안이 현행 위원회 징계규칙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통한 실익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람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제3장)

가. 진실규명 신청, 조사기간(제21조,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③ (생략)	제21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4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먼저, 진실규명 신청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0.12.10.~2022.12.9.)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기 위원회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해 미해결된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⁹⁾

이에 개정안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사건의 추가접수 및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후술할 위원회 조사기관 연장과 연계하여 신청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2기 위원회가 2020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시까지도 여전히 추가 접수 및 직권 조사 개시 민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기간을 원칙적으로 규정한 후, 추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진실규명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원회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9) 부산일보, “형제복지원 ‘남겨진’ 피해자들, 야속한 국가에 또 운다”, 2024.8.27.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 까지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²⁰⁾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전체 접수사건 20,924건 중 18,808건(89.9%)을 종결처리하였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도 총 2,116건(10.1%)에 달하였음.

개정안은 위원회의 원칙적인 조사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도 2년 이내의 범위로 1년 확대하여 기간 만료로 인한 조사중지 사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를 통해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은 2기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0.6.9.)에서 조사기간을 이전보다 단축하기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한시적 조사법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 2024.1.23. 진실화해위원회 제71차 전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 의결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7건의 안전이 병합 심사되었는데,²¹⁾ 제371회 국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19.9.6.)에서는 위원회가 상설적인 위원회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4년(2년 연장 가능)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기 위원회 출범은 추가적인 구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1기보다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번안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원회안을 반려받아 제377회 국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번안의결(2020.5.19.)하였는바, 안전의 수정 내용 중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²²⁾

이렇게 볼 때, 접수 건수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신청기간을 1기 위원회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 개정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주어진 조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진실규명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기 위원회 출범 당시 국회의 결정 취지라고 볼 수 있음.

21) *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등 47인)
*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4인)
* [20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60인)
* [20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등 11인)
*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22) 조사기간 단축 이외에, 상임위원 수를 변경하되 배상 문제, 진실규명 범위, 진실규명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진실규명 조사의 진행 상황, 추가적인 조사 수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의 취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포괄적 과거사 정리라는 법 제정의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3기 위원회의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나. 진실규명 조사개시(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u>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u>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u><신 설></u>	제24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u>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u>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u>이 경우 직권조사의 범위는 의결로 결정한다.</u> ④ 위원회는 <u>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u> 직권으로 조사하고 <u>관련 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u>

개정안은 역사적 중요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제3항), 조사과정에서 미신청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제4항) 위원회의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법 제2조제1항각호의 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신청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및 피해회복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진실규명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일괄 배·보상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진실규명 조사방법(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③ (생략)	제25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

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생략)

<신 설>

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군사 · 외교 ·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 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현행과 같음)

⑪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⑫ 위원회가 제1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3 ·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⑬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같은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⑭ 제13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u> <u>⑮ 제1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등의 자료제출 비협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등을 근거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9항), 통신 및 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제11항~제15항).

현행법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3조 제9항),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해당 기관들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²³⁾

다만, 유사 과거사 위원회 관련 법률에 이와 관련된 유사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 도입의 적절성 및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안 제1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관련 규정의 경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유사 규정이 존재하므로,²⁴⁾ 위원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 해당 규정의 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3항~제15항은 조사대상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조항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23) 이와 관련하여 제2기 위원회가 '신정일 씨 불법구금 사건' 관련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상 '조직 등의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24년 1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자료제출 명령을 의결한 바 있음. 연합뉴스, “진실화해위, 국정원에 '안기부 불법구금' 자료제출 명령”, 2024.1.23.

2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사의 방법)** ⑩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법률」 등에서 발견되나,

이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개정안과는 그 취지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임.²⁵⁾

《 금융정보등의 제공 관련 유사 입법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25)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이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동 개정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금융정보 제공 조항 도입 취지를 명확화하는 한편, 동 규정의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위원회 조사역량 제고 가능성과 예상되는 부작용,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정의 도입을 통해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활동은 경찰 및 검찰의 범죄 수사와는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과거사 조사 위원회의 사례와 비교할 때 통신사실 확인,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권한 부여가 과거사 조사 기관인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제26조)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 한다)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둔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u>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u> <u>③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u> <u>⑥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발굴에 따라 토지등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 또는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변경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 <u>⑦ 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단의 설치·운영, 제2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개정안은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발굴과정에서 사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할 경우 그 보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전국 21개 발굴대상지에서 유해 274구, 치아 207점, 유품 1,720점을 발굴하였고, 발굴된 희생자 유해 11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제2기 위원회의 유해발굴 성과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발굴을 위해 2022년 전국 381개소의 실태조사로 우선발굴대상지 37개소 선정,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전국 21개소에서 유해 274구, 치아 207점, 유품 1,720점을 발굴
 - 2022년 7개소 유해발굴(예산 584백만원) 총 유해 153구 유품 795점 발굴
 - 2023년 8개소 유해발굴(예산 732백만원) 총 치아 207점, 유해 34구, 유품 431점 발굴
 - 2024년 6개소 유해발굴(예산 345백만원) 총 유해 87구, 유품 494점 발굴
- 안산 선감동 유해발굴 조사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보
 - 봉분 44기 조사, 미성년 치아 207점 발굴
 - 묘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정식매장이 아님을 확인
- 발굴된 희생자 유해 11구의 신원 확인
 - 2023년 유해 501건, 유가족 119건 검사 → 6구 신원확인
 - 2024년 유해 230건, 유가족 150건 검사 → 2025년 5구 신원확인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온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유해발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사 입법례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타인의 토지·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발굴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관련 유사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⑧ (생략)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③ (생략)
--------------------------------------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생략)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유해발굴단의 지속적인 운용 및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거사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유해발굴단을 설치·운용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방부 내 유해발굴감식단이 조직되어 있음.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직도 》



* 출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또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시료 채취 및 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 시료 채취 및 검사 조항 관련 유사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

	(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진실규명으로 밝혀진 희생자의 유해발굴 등을 통한 신원확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유해발굴단 설치는 한시적 기구인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업 운용 및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14조제5항(개정안 제15조제6항)에서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유해발굴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마. 청문회의 실시(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② (생략)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28조(청문회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u>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공개 청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취지로 판단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청문회 공개 관련 유사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청문회)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청문회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바. ‘진실규명불능’을 ‘진실규명 미해결’로 변경(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 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진실규명 미해결 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미해결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경우 ‘진실규명 불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진실규명 미해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향후 재조사 등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상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불능결정 이후 재조사 추진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같은 용어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용어변경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위원회 규칙에서 ‘진실규명불능결정’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고려할 때 1기부터 이어져 온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결정의 공개(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8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5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국민 화해와 민주 발전을 위하여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개정안은 위원회의 각하·조사개시·진실규명 등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과거사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사건, 조사개시결정일을 포함한 조사 개시 경과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가 1년에 두 번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공개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및 각하결정 공개의 실익과 공개를 위해 투여되는 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 간의 비교형량과 조사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 시기,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 공무원의 파견 등(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u>않는</u>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u>아니하는</u>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u>의하여</u>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u>의하여</u>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

	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 수행 중 명백하고 현저한 공적을 이룬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파견공무원은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

현행법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된 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기준으로 위원회 총 인원수는 203명(현원 기준)으로, 이 중 파견인력은 정원 내 50명(국가직), 정원의 37명(지방직 35명, 법무관 1명, 방첩사 1명) 등 총 87명임.

《 제2기 위원회 인력 현황 》

(2025.6.9.기준, 단위: 명)

계 (총원/현원)	정원(136) / 현원(125)			정원 외(86/78)			
	정무직	별정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전문임기제	행정실무
222/203	3/1	78/74	55/50	35	2	26/26	23/15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개정안은 해당 규정에 위원회로 하여금 파견 공무원의 교체나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파견공무원의 수를 위원회 직원 정수의 1/3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파견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증진 및 사기진작이 기대되나, 해당 공무원을 파견한 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들 규정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원회의 이익과 침해되는 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이 파견 철회 요청 및 파견공무원 정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파견 철회 요청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일반행정·예산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정원, 보훈부, 행안부 등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파견 공무원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파견공무원 비율 제한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²⁶⁾

26) 현재 위원회 정원 내 인원 중 파견공무원 비율은 약 43%에 달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령²⁷⁾상 기관장에 대한 파견공무원 특별승진 의무 부과는 인사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파견 공무원 ‘정수’라는 표현은 유사 입법례²⁸⁾를 고려하여 ‘정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인사혁신처는 특별승진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등 심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특별승진 요청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자. 조사대상자의 보호(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u>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27)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은 특별승진을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28)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 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u>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u>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u>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u>
--	--

현행법은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그를 가해행위자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따를 때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조사대상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로 인해 피해자 등의 알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등의 권리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법 제31조제3항이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안 제41조제2항은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사대상자 보호 조치 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정안 제1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된 공개 방식 및 단서를 삭제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제2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2항에서 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사대상자 보호 조치의 수준을 하향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동 규정 개정의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차. 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u>제23조</u>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삭제<2023.3.21.> ⑥ (생략) ⑦ <u>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42조(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u>제25조</u>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u><삭 제></u>

개정안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사현황에 대한 피해자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2조제7항이 과거사 사건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는 사건 관련 조사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 등을 보호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삭제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카.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 변경(제43조)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제43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u>제32조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u>행정안전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u>행정안전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u>제42조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u>국무총리</u>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u>국무총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무총리에게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총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가²⁹⁾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상황을 관리하게 될 경우 권고사항 이행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 경우 국무총리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업무이관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권고사항 이행점검·관리 업

29)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무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이를 개정하는 경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 역시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 》

제6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권고사항 이행관리의 실효성 확보적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또한 국무조정실은 2008년부터 과거사 정리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를 담당하여 관련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권고 이행상황 점검·관리 주체(행안부장관)와 절차 등을 반영한 「과거사정리법」 개정('23.3.21.)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관리의 실효성과 안정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타.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고발 및 수사 의뢰(제45조,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

	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6조(고발 및 수사 의뢰)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범죄 혐의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제21조에

	다른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개정안은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 의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이, 고발 및 수사 의뢰의 경우 「군의원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위원회에 도입하는 것에는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봄.

《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고발·수사 의뢰 관련 유사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군의원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의원사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예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이하생략)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진실규명사건의 경우 장소적으로는 국내부터 해외까지,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까지 이르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 신설이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로 위원회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8조(안 제52조)와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이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인 점, 전쟁 중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

자 처벌을 UN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국제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진실을 고백하여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와 조사 결과 밝혀진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내지 수사 의뢰는 양립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보다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영장 청구의뢰 이후의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의뢰’라는 단어의 의미의 불분명성을 고려하여 ‘의뢰’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진실규명사건의 장소적·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위원회에 해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은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제4장)

가. 국가의 의무(제47조)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u>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4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u>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고, 명예회복·재발방지·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국가의 의무로서 피해자의 피해·명예회복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변경하고 가해자 관련 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국가의 의무로서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강조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의 ‘피해회복’이라는 용어가 금전적인 배·보상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과 같은 유·무형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배·보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화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재발방지 또한 UN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중요 구제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를 국가의 의무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피해회복 조치가 금전보상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배·보상에 국한하려는 개정안의 표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제49조)

현행	개정안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u>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u>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u>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49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u>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과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u>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u>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현행법은 정부가 희생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희생자·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명시하여 완전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음.

다만, 배·보상의 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사정변경 시 법률개정을 통해 대응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의 대상, 근거 등 중요 부분은 법률로 규정하면서도,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상 관련 규정 유사 입법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희의원 대표발의)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기준 마련 후 예산 및 사정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배·보상 대상, 근거, 방법 등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보칙(제5장)

가. 비밀준수 의무(제55조)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u>자문기구 또는 속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자</u> ,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 제15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³⁰⁾ 현재 전체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제1·2소위원회)의 자문위원단이 운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비밀준수 의무자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30) 법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하생략)

이에 개정안은 비밀준수 의무자에 현행법 제15조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와 개정안 제17조에 의해 설치하려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진실규명 과정에서 위원회가 취득한 민감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정안의 비밀정보 보호 강화 취지를 수용하는 입장임.

나. 자격사칭 금지(제56조)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u>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u>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업무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 사칭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자격사칭 금지 범위를 이와 같이 확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봄.

《 자격사칭 금지 관련 유사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u>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u>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u>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u>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과거사정리법」 보다 자격사칭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제59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9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u>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제1항)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이고, 그 시효기간은 각각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 및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임.

진실규명결정 대상인 과거사 사건의 경우 객관적 기산점인 5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³¹⁾

31)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등(2014헌바148, 2014헌바162, 2014헌바219, 2014헌바223, 2014헌바290, 2014헌바466, 2015헌바50, 2015헌바440, 2016헌바419), 2018.8.30.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 헌법재판소 결정(2018.8.30., 2014헌바148등) 》

[결정요지 중 발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

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이에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과거사 희생자 등의 피해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과 주관적 기산점을 구분하지 않고 소멸시효에 대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외의 모든 사건³²⁾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소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2) 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와 관련하여 개별법에 보상심의회 설치 규정과 함께 해당 보상의 단기(주관적)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³³⁾

《 보상심의회 설치 및 단기소멸시효 규정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u>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u>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

33) 다만, 이와 같은 개별법의 단기소멸시효는 개별법의 보상규정을 통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전부개정안에 이와 같은 규정을 추가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또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 지급결정서正本이 <u>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正本이 <u>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소멸시효 특례 신설을 통해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할 경우 소송의 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한 피해 등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가 여전히 배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단기소멸시효 도입 등 별도의 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주관적 소멸시효를 포함한 소멸시효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과,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외의 모든 사건에 동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벌칙(제6장)

가. 벌칙(제61조)

현행	개정안
제45조(벌칙) ① (생략)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생략) ② (생략)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6. (생략) ③ (생략)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제6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행사한 자 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신 설>	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5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④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안은 현행 벌칙조항에 더해 안 제26조의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입법례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역시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나 벌칙수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벌칙 관련 유사 입법례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한다는 입장임.

나. 양벌규정(제6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구성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법률 위반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양벌규정 신설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양벌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을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해당 법률 조항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으나,³⁴⁾

이는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처벌하도록 하는 점이 문제된 것으로, 해당 규정도 위헌판결 이후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바,³⁵⁾

34) 헌법재판소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2009.7.30.

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양벌규정)

개정 전(시행 2006.3.24., 법률 제7901호)	개정 후(시행 2010.3.22. 법률 제10149호)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갖추고 있는 개정안의 경우 책임주의 원칙 위반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61조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증, 허위의 신청, 문서 등 제출명령 위반 등은 업무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감독자의 의무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함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서는 양벌규정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안 제61조에 규정된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 위증 등이 업무에 관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법인 또는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의무위반 인정이 개념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해당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균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9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규정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등의 적용례와 함께 진실규명,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기록의 승계 및 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7조에서 진실규명이 미완료되었거나 미진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 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 중 위원회 활동시한 만료로 인한 조사중지결정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 없이 3기 위원회가 당연승계하여 조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1기 위원회의 경우 활동시한 만료로 인한 조사중지결정이 20여건에 불과했으나 2기 위원회의 경우 총 2,116개 사건에 대해 조사중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신청 없이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큰 상황으로 판단됨.

《 1기·2기 위원회 조사배정 및 처리건수 현황 》

구 분	1기	2기
조사배정 및 처리건수	• 배정 11,175건 - (진실규명) 8,450건 - (규명불능·각하 등) 2,705건 - (조사중지) 20건	• 배정 20,924건 - (진실규명) 11,908건 - (규명불능·각하 등) 6,900건 - (조사중지) 2,116건

* 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재작성

또한 개정안 부칙 제9조제2항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2기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기 위원회 조사중지사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점, 3기 위원회는 그 성격상 2기 위원회를 승계하는 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기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을 3기 위원회가 직접 승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³⁶⁾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는 등의 조항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나, 조사자료 등 기록물·인력 승계 및 조사의 연속성적 측면에서는 현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3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